개선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동양생명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4.9.1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■ 개선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

(1)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상품 관련 비교·공시 미흡

□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협회 등에 제공하여 비교·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○ 회사는 A 등 13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㉮ 등 3개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변경(2021.1.1.)되었음에도 변경된 모집수수료율을 2022.4.5.까지 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공시되지 않았고

○ A 등 1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㉯의 모집수수료율이 2021.9.5. 1.49%에서 2.68%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수정·공시하지 않았으며

○ ㉮ 등 8개 보험상품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상품판매계약이 중지되었음에도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시내역을 삭제하지 않아 2022.4.5.까지 모집수수료율을 그대로 공시한 사실이 있음

< 조치할 사항 >

○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거나 상품판매가 중지되는 등 변경사항이 적시에 공시될 수 있게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